

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 (안)

의안 번호	16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 이유

- 동일구역내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을 통합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민교육원을 폐지

주요 골자

- 도민교육원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도민교육과 신설

근거 법령 :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

따로 붙임

1.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 (안) 1부
2. 참고자료 (근거법령내용) 1부 끝

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 (안)

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 (조례278호, 1968. 2. 15) 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조례에 의한 충청북도도민교육원의 업무와 시설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이를 승계한다

참 고 자 료 (근거법령내용)

□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

-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